

忠清北道農漁村所得開發基金運營管理條例案

檢討報告告

1. 提出者 : 柳明熙議員外 8人

2. 提出日字 및 회附日字

가. 提出日字 : 1992. 11. 19

나. 회附日字 : 1992. 11. 19

3. 提案理由

- 農水產物 輸入開放 壓力에 따른 對應策으로 農村과 農民의 어려움을 우선 所得向上 쪽으로 덜어주기 위하여 새所得源 開發을 目的으로 基金을 造成 低利로 資金을 融資하여
- 農漁村指導者들이 農漁村에 定着하여 農漁業을 營為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主要骨子

- 本 條例의 制定으로서 農漁村 所得開發基金 運營·特別會計를 設置하고 基金造成 運營管理
- 基金造成
 - 一般會計 轉入金
 - 金融機關 借入金
 - 農村支援 關聯機關 團體와 參與希望者가 자진 寄託한 誠金 및 出資金
 - 融資金의 債還金 및 運營 収入金

○ 基金支援 對象者

- 4-H 會員, 農漁民後繼者, 農村指導者, 새마을·指導者, 其他 農漁業에 성실히從事하는 者

○ 基金支援 對象分野

- 所得開發 事業
- 輸出作目 開發育成 事業
- 農漁村 所得增大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基金支援 (融資) 額 : 1 千萬원 ~ 2 千萬원

○ 融資金 債還 利率 :

- 1年 거치 3年 均等 債還
- 年 3 %

○ 審議委員會 構成 및 機能 (道政 調整委員會에서 代行)

- 開發基金 運營 및 決算
- 事業費 支援, 融資金 回收, 決算, 監督

5. 檢討意見

忠清北道 農漁村所得開發 基金 運營管理 條例 制定案을 檢討한 바,

現在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別로 多樣하게 農漁民에게 各種 支援을 하고 있으나 보다 農村에 定着하여 農村을 지키면서 所得開發을 為한 能力を 發揮할 수 있는 者에게 低利로 事業資金을 特別히 支援하기 위한 道 次元의 制度的 裝置格인 本 條例 制定은 큰 意味가 있다고 생각되며 점차 施行하면서 미진한 部分은 補完 改善한다면 實效性이 클 것으로 期待되어 條例 制定은 内容과 같이 時期適切하다고 思料됩니다.

6. 別添

○ 忠清北道 農漁村 所得開發基金 運營 管理 條例案

○ 충청북도 농어촌 소득 개발 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1992.]

조례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지도자" 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이 있는 자로 4회원,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와 기타 영농에 성실히 앞장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개발기금"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농촌소득 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① 개발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발기금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개발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개발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기금 운영심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의 대상자 선정

3. 기타 경미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① 개발기금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 운영계획은 다음 각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금의 운영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년도 개발기금 사용계획

3.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개발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농어촌 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개발 사업

②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사업

③ 기타 농어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상사업자 선정) ① 대상사업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종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5조의 관한 사업비 용자를 받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 의 선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의 지원은 용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② 용자금(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일천만원 이상·이천한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및 이율) ① 용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원금이자는 년 3%로 하되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때에는 농협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9조(용자금의 회수) ① 시장,군수는 용자금을 받은 자가 용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용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기금운영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 업무는 농어촌개발국에서 관장한다.

제11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농촌지원 관련기관 단체와 참여희망자가 자진 기탁한 성금 및 출자금

4. 용자금의 상환금 및 운영수입금

5. 기타 잡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의 각호중 해당되는 사업비와 특별회계 운영경비로 지출 한다.

③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경우 분임장수관은 농어촌 개발과장 수입금 출납원은 농정기획 계장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농어촌개발국장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용자(보조)를 받은 시군에 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하고 지도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